KOSPI 200 지수산출방법론 개선

I 주요 개선사항

1	구성	선조.	목 산	l정]	비주
•	. T	20		: O /	

가.	글로벌 산업분류체계를 참조하여 9개 산업군으로 분류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8개 산업군 [*] 으로 분류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서비스업, 통신업, 금융업
	(개선) GICS의 경제섹터를 참조하여 9개 산업군 [*] 으로 분류에너지, 소재, 산업재,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금융/부동산, 정보기술/통신서비스, 유틸리티
-	구성종목 심사 시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등 종목심사기준을 모든 산업군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나. 🔈	산업군별 종목선정기준 적용 시 누적시가총액 기준 상향
	(기존)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군에 대하여 산업군별 누적 시가총액이 70%에 달하는 종목까지 선정
	(개선) 누적시가총액 기준을 80%로 상향
다. 1	버퍼기준 일부 변경
	(기존) 산업군별로 기존 구성종목수에 부족한 잔여종목을 해당 산업군 내에서 시가총액순으로 추가로 선정
	(개선) 구성종목수가 200종목에 미달할 경우 산업군 구분 없이 미선정된 기존종목 중에서 잔여 종목수만큼 시가총액순으로 추가 선정

2. 기타 방법론

가. 신규상장종목 특례편입 기준 변경
□ (기존) 신규상장종목의 상장 후 15매매일간 시가총액이 전체 시장의 1% 초과 시 정기변경 이전에 특례편입 가능
□ (개선) 신규상장종목의 상장 후 15매매일간 시가총액이 전체 보통주 종목 중 50위 이내이면 특례편입 가능
나. 구성종목간 합병 시 지수반영 방법 변경
□ (기존) 피합병법인 매매거래정지일에 종목교체 후 합병신주는 상장일에 반영
□ (개선) 피합병법인 매매거래정지일에 종목교체 및 합병신주도 미리 반영
다. 구성종목 기업분할시 신설법인 편입기준 변경
□ (기존) 신설법인의 시가총액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구성종목으로 편입
 ① 산업군 내 누적시가총액 70% 이내이고, 산업군 예비종목 1순위 보다 큰 경우, ② 코스피 200 구성종목 중 100위보다 큰 경우
□ (개선) 신설법인의 시가총액 순위가 코스피 200 구성종목 중 100분의 80 이내인 경우 구성종목으로 편입
라. 유동비율 정기변경 주기 및 반영비율 변경
□ (기존) 연 1회(6월) 정기조정하되 5% 단위 대표비율 적용
□ (개선) 연 2회(6월,12월) 정기조정하고 1% 단위 실제비율 적용

Ⅱ 시행일

□ '17년 KOSPI 200 정기변경 시(6.9)부터 개선된 방법론 적용